

조세, 보험, 세관의 일부 중요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2018년 3월



내용

이번 뉴스중에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은 고객님에게 새로운 일부정책 안내를 다음같이 해드립니다:

1.



GROSS와NET소득을 같이 받은 대상에 대한 개인소득세.

2.



FDI 기업은 자기기업의 생산품이 아닌 상품들의 제장소에 수출영업권을 아직 진행할수 없다.

3.



외지방에 기계,설비들을 팔고 동시에 설치하는 서비스의 경우에 왕내거래 VAT부담을 납세해야 한다.

4.



제 13개월의 월급항목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의 면제.

5.



연결거래관계의 발생이 있는기업에 대한 독립측부터 차입금의 비용 문제.



1. GROSS 와 NET소득을 같이 받은 대상에 대한 개인소득세.

Hà Nội 세국서는 2017/12/20일에 문서 제81831/CT-TTHT호를 국내에 거주된 외국인에게 다 2 가지 형식인 Gross와 Net의 소득지급에 대한 개인소득세정책을 발급한다:



월급(GROSS): 근로자가 개인소득세를 납세책임한다



회사의 개인을 대신으로 지급 (집임대료, 병진단치료비, 보험료,...) (NET):

회사는 개인소득세 부담되면 회사가ROSS소득분을 아직 세없는소득 (NET)으로 환산해서
기타NET소득과 같이 종합해서 그후에 총소득 NET를 규정처럼 개인소득세 부담의 소득으로 환산한다.

2. FDI 기업은 자기업의 생산품이 아닌 상품들의 제장소에 수출영업권을 아직 진행할수 없다.

2018/1/31일에, 상공부는 문서제130/XNK-CN호를 발급해서 FDI기업의제장소에 수출입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에의하면 상공부는 FDI기업의 외국상인에게 상품수출하지 만 베트남에 납품해준 상품수출권(수입품 혹은 베트남에 다른 기업의 생산품 등 포함) 경우에 대한 조정문서나 법규가 아직 없다고 긍정한다. 그전에 2017/10/11일에 상공부 는 문서 1384/XNK-CN으로 그시점에 있는 각문서와 법규에 근거해서 비슷된 문제들을 안내한다.

때문에, 현시점에 각 FDI기업들은 자기업의 베트남에 생산된 상품이 아닌 물건들을 제 자리에 수출할수 없다고 이해할수 있다.





3. 외지방(다른시,성)에 기계,설비들을 팔고 동시에 설치하는 서비스의 경우에 왕내거래 VAT부담을 납세해야 한다.

2018/1/30 일, 세 총 국 은 문 서 413/TCT-KK 를 발 급 해 서 외 지방(다 른 시, 성)에 기 계, 설 비 들 을 팔 고 동 시 에 설 치 하 는 서 비 스 의 활 동 에 대 한 VAT 적 용 을 안 내 한 다. 그 에 따 라 기 업 은 외 지방 의 고 객 에 기 계, 설 비 공 급 계 약 을 하 고 동 시 에 설 치,

시 운 전, 기 술 안 내... 등 으 로 안 전 적 활 동 보 장 을 책 임 지 면 기 업 이 그 지 방 에 고 객 에 기 계, 설 비 공 급, 동 시 에 설 치 활 동 에 대 한 VAT 의 신 고, 납 세 를 외 지방 에 왕 내 적 건 설, 설 치, 판 매 활 동 의 VAT 규 정 에 따 라 진 행 한 다.

4. 제 13개월의 월급항목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의 면제

사회보훈노동부는 최근에 문서 제560/LDTBXH-BHXH호를 2018/2/6일에 사회보험료를 입금하는 근거로의 봉급 확정 작업에 대한 안내한다.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의 부담 봉급은 월급기준, 수수료, 기타보충금항목들로 규정된다. 필수적 사회보험료의 부담 봉급은 기타 제도 및 복리후생금 예, 노동법의 제103조규정의 포상금, 창의안포상, 교대 식사료, 사용차량 지원, 전화, 교통, 거주집, 유아관리, 양육금...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규정과 대비해서 사회보훈노동부는 제13개월 월급과 근로자의매년 업무결과에 근거된 포상금들이 사회보험입금근거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개별적 답문이 기 때문에 적용하기전에 기업은 근로자에게 각 지급항목들을 자세히 현행규정과 안내에 따라 검토 해야한 필요가 있다.



5. 고객에 기계, 설비공급계약을 하고 동시에 설치연결거래관계의 발생이 있는기업에 대한 독립측부터 차입금의 비용 문제.



Bình Dương성 세국은 문서741/CT-TT&HT 2018/1/16일로, 기업이 연결거래측부터 활동 Loan의 발생이 없고 오직 독립측부터 차입금이 발생만 있으면서 그런 차입금에 대한 연결측의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 차입금의 비용이 의령 제20/2017/NĐ-CP호 (20% EBITDA에 초과하지 않는 차입비용)의 제8항, 3점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문제는 여러 걸린점과 기타론쟁들이 있기때문에 각 지방세국들의 집행안내 가 다르다. 전번 뉴스중엔 Grant Thornton 도 Hà Nội 세국의 현 관점을 업데이트를 했고 그에 따라 기업이 연결거래있고 차입금이 비용 발생이 있으면 의령 제20의 규정처럼 20% EBIT DA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의 활동기중 발생한 차입이자 총비용이고 열결측이나 독립측 부터 차입이자의 비용이 구별없다.

고객님들은 조세, 활동과정에 관련된 법규정책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의 전문가들과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

Contacts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

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etnam(주)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8
E hmy.tra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